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75호 2020. 7. 9.(목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871호 사촌1, 송지2 소규모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완료 공고·공람 ----- 1

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876호 사천시 이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---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사 천 시 공 보

제 675 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871호

사촌1, 송지2 소규모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완료 공고·공람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촌1, 송지2 소규모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사 천 시 장

1. 사 업 명 : 사촌1, 송지2 소규모 지적재조사지구
2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3.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
 - 사촌1지구 : 17필지, 7,886.4㎡
 - 송지2지구 : 16필지, 2,641.7㎡
4. 지적확정조서 : 붙임문서 참조
5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
6. 공람장소 : 사천시청 토지관리과
7. 공람 비치서류 : 별도첨부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8. 문의처: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(☎055-831-2841~2843,2978)

사 천 시 공 보

제 675 호

■ 소규모 지적재조사 사촌1지구 지적확정조서

일련 번호	토지 소재지	종전토지			일련 번호	확정토지			증가면적 (㎡)	감소면적 (㎡)	소유자	주소	
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지번	지목	면적(㎡)					
1	사남면 사촌리	319-1	답	644	1	319-1	답	606.8		-37.2	최*문	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새담길 **	
2	사남면 사촌리	319-2	대	962	2	319-2	대	962.0			최*문	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새담길 **	
3	사남면 사촌리	319-4	대	660	3	319-4	대	672.8	12.8		최*원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19, ***동 ***호	
4	사남면 사촌리	319-7	대	148	4	319-7	도로	105.0	16.6		사천시		
					5	319-8	도로	59.6			사천시		
5	사남면 사촌리	320	대	909	6	320	대	909.0			최*호	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새담길 ***	
6	사남면 사촌리	320-1	대	768	7	320-1	대	1,201.5	433.5		강*오	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새담길 ***	
7	사남면 사촌리	321	대	900	8	321	대	839.4		-60.6	김*순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131, ***동 ***호 (반여동,반여현대아파트)	
8	사남면 사촌리	321-1	대	603	9	321-1	대	674.1	71.1		최*자	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5로 31, ***동 1****호	
9	사남면 사촌리	321-2	대	253	10	321-2	대	242.5		-10.0	최*원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881번길 19, ***동 ***호	
10	사남면 사촌리	321-3	도로	91	말소					-91.0	김*식	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변영로55번길 112, ***호	
11	사남면 사촌리	814-28	구거	221	11	814-28	구거	79.4		-11.0	구 (농림수산 식품부)		
12	사남면 사촌리	산3-16	임야	960	12	320-2	종교용지	176.9			-60.9	강*오	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새담길 ***
					13	320-3	전	279.9					
					14	320-4	전	292.6					
					15	320-5	묘지	149.7					
13	사남면 사촌리	산3-18	임야	836	16	322-2	전	279.2		-200.8	경주***** ***** 후손종중	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***	
					17	322-3	전	356.0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 675 호

■ 소규모 지적재조사 송지2지구 지적확정조서

붙임련 번호	토지 소재지	중전토지			일련 번호	확정토지			증가면적 (㎡)	감소면적 (㎡)	소유자	비고
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지번	지목	면적(㎡)				
1	용현면 송지리	1163-21	대	165	1	305-1	대	272.4	107.4		조*덕	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감결길 17, ***동 ****호(대우마리나아파트)
2	용현면 송지리	1163-24	대	165	2	305-2	대	221.0			문*진	용현면 송지리 ***
3	용현면 송지리	1163-86	대	56								
4	용현면 송지리	1163-25	대	251	3	305-3	대	251.0			김*규	용현면 송지리 ****-**
5	용현면 송지리	1163-26	대	228	4	305-4	대	256.0	28.0		문*균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, ***동 ****호(상남동,성원아파트)
6	용현면 송지리	1163-29	대	13	5	305-5	대	25.7	12.7		김*숙	용현면 송지리 ****-**
7	용현면 송지리	1163-30	대	131	6	305-6	대	108.6		-22.4	조*관	용현면 송지리 ****-**
8	용현면 송지리	1163-31	대	80	7	305-7	대	80.0			조*규	용현면 송지리 ***
9	용현면 송지리	1163-32	대	231	8	305-8	대	211.0			조*수 외 1인	별리동 ****-**
					9	305-9	대	20.0				
10	용현면 송지리	1163-27	대	228	10	305-10	대	172.0			조*수 외 2인	별리동 ****-**
					11	305-11	대	46.0				
					12	305-12	대	10.0				
11	용현면 송지리	1163-28	대	56	말소				-56.0	문*균 외 1인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, ***동 ****호(상남동,성원아파트)	
12	용현면 송지리	1163-76	도로	21	13	1163-76	도로	68.4	47.4		사천시	
13	용현면 송지리	1163-77	도로	19	14	1163-77	도로	15.9		-3.1	국(국토교통부)	
14	용현면 송지리	1163-117	하천	589	15	1163-117	도로	583.0		-6.0	국(국토교통부)	
15	용현면 송지리	1163-118	도로	406	16	1163-118	도로	273.7		-132.3	국(국토교통부)	

사 천 시 공 보

제 675 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876호

「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9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2020. 4. 7. 「아동복지법」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및 제2조)

-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름

○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(안 제3조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임용

○ 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(안 제4조)

-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.

사 천 시 공 보

제 675 호

○ 수당 등(안 제5조)

-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.

3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 (www.sacheon.go.kr의 민원/공개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종합정보>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여성가족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672, FAX: 831-6018)

사 천 시 공 보

제675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 치 법 규 명 : 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의 견	비 고

사 천 시 공 보

제675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)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.

②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4조(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)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,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675호

제5조(수당 등)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675호

관 련 법 규

□ 아동복지법

제22조(조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
3.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·운영
4.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 1. 28.>

③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1.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
2.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
3.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
4.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
5.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,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6.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

④ 보장원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. 15.>